

“이민자보호주법안”,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해줄까요?

“이민자보호주법안”으로 알려진 새로운 주 법안 California Values Act(SB 54)는 경찰, 보안관이 이민국 직원으로서 (이민자) 추방을 강행하는 역할을 제한 하는 법률입니다.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계십시오!



KNOW YOUR RIGHTS!

이 법안에 대한 내용 및 위반 사항 신고 방법에 대한
문의는 1-844-878-7801로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
www.iceoutofca.org를 방문해주세요.



경찰이나 보안관들은:

- 여러분의 이민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없습니다
- 단순히 추방명령서를 소지 하거나 다른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.
- 이민세관단속국 (ICE) 및 국경경비대 (Border Patrol) 직원을 통역사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공공 정보가 아닌한, 개인정보, 즉, 집주소와 같은 신상정보를 ICE나 Border Patrol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.

만약에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들이 여러분을 체포한다면, 그들은:

- 여러분을 감옥에 추가 시간으로 붙잡아두어 ICE가 연행하도록 도와서는 안됩니다.
- 여러분의 서면 동의서 없이 ICE의 인터뷰 요청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은 ICE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묵비권을 행사 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, ICE에게 여러분의 석방이나 출소일자와 시간을 통보할 수 없으며 여러분을 ICE로 이송 할 수 없습니다.
 - 전과 종류에 따라 지방법집행기구는 ICE나 Border Patrol에게 여러분의 출소일자를 통보하거나 이송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통보가 허락되는 예외의 기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
 - 주 교도소의 중범죄 유죄 판결
 - 15년 내의 대부분 중범죄 판결
 - 5년내의 심각한 경범죄 기록
- (그러나 적법절차를 보호하기 위하여, 지역 주민들은 위의 기준보다 더 친이민적이고 예외가 적은 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)
- 석방이나 출소일자가 공공정보일 경우, 지방법집행기구는 이러한 정보를 ICE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
- 만약 경찰이나 보안관들이 ICE에게 석방이나 출소일자와 시간을 통보하고자 한다면, 여러분에게 반드시 미리 서면 통보서와 ICE/Border Patrol의 정보요청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. 이러한 사전 통보가 여러분의 케이스에 대한 할 시간을 더 벌여 줄 것 입니다.

주 교도소 임원들은:

- 여러분의 서면 동의서 없이 ICE의 인터뷰 요청을 허락할 할 수 없습니다.
- 여러분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.
- 등급 분류 심사를 할 때 이민신분을 고려 할 수 없습니다.

기억해두세요! 여러분은 항상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경찰이나 보안관에게 한 발언들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민신분, 국적, 미국에 언제 어떻게 왔는지, 아니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.

(이 정보는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.)

*ICE와 Border Patrol은 “이민국 직원”을 지칭 합니다.